#### [서식 예] 전부금청구의 소(집행권원 : 화해조서, 예금)



# 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주식회사 ◇◇은행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 (우편번호)
대표이사 ◈◈◈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## 전부금청구의 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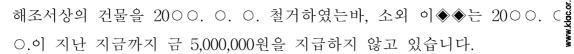
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〇〇. 〇〇. 〇〇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# 청 구 원 인

1. 원고에 대하여 소외 이◈◈는 ○○지방법원 20○○가단○○○호 건물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에 소외 이◈◈와 합의하여 "1. 소외 이◈◈에게 원고는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지상 단층주택 20㎡를 20○○. ○. ○.까지 철거하고, 2. 원고에게 소외 이◈◈는 원고가 위 건물을 철거하면 20○○. ○. ○○.까지 금 5,000,000원을 지급한다. 3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"라는 화해가 성립되어 같은 법원으로부터 화해조서정본을 받고, 원고는 위 기일까지 화



- 2. 그런데 원고는 소외 이◈◈가 피고은행에 20○○년 초부터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상당한 돈을 예치한 사실을 부단히 추적하여 알게 되었고, 이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고 소외 이◈◈을 채무자로 하여 귀원 20○○타채○○○○호로 피고은행 ○○지점에 소외 이◈◈가 개설한 보통예금계좌(계좌번호 ○○○-○○-○○○○○)에 예치한 금 5,000,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을 얻어 같은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20○○. ○○. 송달되어 확정되었으나, 피고은행은 지금까지 위 전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.
- 3.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전부금 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〇〇. 〇〇. 〇〇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##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

1. 갑 제2호증 위 결정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

#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각 1통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1통1. 소장부본1통1. 송달료납부서1통

 20○○.
 ○.
 ○.

 위 원고
 ○○○
 (서명 또는 날인)

### ○○지방법원 귀중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□『소멸시효일람표 www.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 용	・인지액 : ○○○원(□ 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 : ○○○원(□ 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		
및 기 간	·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기 타	<ul> <li>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는데,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・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고,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짐(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, 제5항, 제7항).</li> <li>·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되고 다만,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(민사집행법 제231조).</li> <li>·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</li> </ul>		

#### 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법인,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,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. 한편, 외국법인,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・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은행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 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소를 제기할 수 있음: 민법 제467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#### 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

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물을 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을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